

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508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5084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가소231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2020. 9. 23.

판결 선고2020. 11. 25.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가소2317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을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의 직원이며, 피고는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은 모친인 F 명의를 이용하여 2019. 4. 17.경 인터넷 G 사이트 'H' 카페에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연락처로 "I"를 기재하였다.

다. C은 2019. 4. 18.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위 연락처로 연락하였고, E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 척 가장하여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7,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C은 2019. 4. 18. 원고의 계좌에서 E이 알려준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9. 4. 18.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송금받고 이 사건 차량은 인도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E이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7,000,000원 중 6,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7,000,000원을 송금하였던 명의인(원고)과 다른 명의의 계좌인 F의 계좌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원을 이체하여 E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방조 행위로 원고가 7,000,000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체받은 금액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손해의 50%인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9. 4.경 이 사건 차량을 12,000,000원 정도에 판매할 목적으로 J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하였다. 피고는 2018. 4. 7.경 "I" 번호를 사용하는 E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E은 피고에게 자신을 중고차매매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다음 날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사진과 차량등록증을 보내 달라고 하여, 피고는 E에게 차량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및 이 사건 차량의 외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2) E은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차량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2019. 4. 17.경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하여 피고와 상의하거나 피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

3) 원고의 직원 C은 2019. 4. 18. E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의를 밝혔다.

4) E은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증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10,5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2019. 4. 18. 피고에게 계약금을 입금할 피고 명의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받았다. E은 같은 날 C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말하며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하였고, C은 같은 날 17:26경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E은 2019. 4. 18. 피고의 계좌로 7,000,000원이 입금된 직후 재차 피고에게 연락하여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으므로 나머지를 반환해달라"라고 하며 반환할 계좌번호로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17:41경 6,500,000원을 E이 알려준 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6) 원고는 E과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E은 원고 등에 대한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단2049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E의 말에 속아 E에게 이 사건 차량 및 차량등록증 사진을 보내주고 계좌번호도 알려준 점, ② E은 피고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고 C을 기망하여 7,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점, ③ 피고는 자신의 계좌로

7,000,000원이 입금된 직후 다시 입금액이 잘못되었다며 반환을 요청하는 E의 말에 속아 바로 E이 알려준 계좌로 6,500,000원을 이체한 점(피고의 계좌로 7,000,000원이 입금되어 다시 6,500,000원이 출금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15분에 불과하다), ④ 피고는 E과 휴대폰으로 연락한 것 외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점, ⑤ 피고는 E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실도 몰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송금한 7,000,000원 중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 즉 피고의 이득액은 피고가 E의 요청으로 반환한 6,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송금한 7,000,000원 전액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민법 제748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민법 제749조 제2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참조), 피고의 부당이득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2020. 8. 13. 제1심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하며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인 202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 금제1914호로 원고의 수령 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538,852원을 변제공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변제공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펴본다.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등 참조),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에 변제공탁을 하였는바, 피고는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변제공탁은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제1심판결의 일부가 취소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반환계좌의 명의인이 송금인과 다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E의 사기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E이 피고를 통하여 사기행위를 하고 있고 피고의 금원 반환 행위가 E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원고가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 역시 E이 중고차매매상이고, 이 사건 차량을 직접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던 점, ②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7,000,000원의 송금인이 개인 명의가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 명의였으므로 피고는 E의 말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은 보증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④ E은 피고의 계좌에 7,000,000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금액을 잘못 송금하였다고 하여 500,000원을 제외한 6,500,000원만의 반환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E에게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당시 및 E의 요청으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할 당시에 E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차량의 계약금을 입금한다는 사실 외에 피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직원 C은 이 사건 차량의 실물을 확인하거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전액을 그대로

송금하였는바, E의 사기행위 당시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당이득금 채권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를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송한도

판사박정미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서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청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제기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항소취지는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청구취지에 기초하여 불복범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수정 기재하였다.